



#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

[시행 2017.12.29.][총리령 제1436호, 2017.12.29., 일부개정]

## 【제정·개정이유】

### [일부개정]

#### ◎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식육가공업 영업자는 연매출액에 따라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해당 작업장에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을 작성·운영하도록 하고, 도축하려는 가축의 체표면이 분변 등으로 인하여 교차오염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관은 해당 가축의 도축을 보류하거나 그 오염원에 대하여 세척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며, 원유에 대한 위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원유의 국가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고, 지육을 포장하거나 위생용기에 넣은 상태로 운반하는 경우 지육이 차량 적재고 바닥에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매달 수 있는 설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## 【제정·개정문】

**제7조**제2항 중 “「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21조제3호나목”을 “「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21조제3호가목에 따른 식육가공업의 영업자, 같은 호 나목”으로 한다.

**별표 2**의2 제1호 중 “도축업·집유업·유가공업·알가공업”을 “도축업·집유업·식육가공업·유가공·알가공업”으로 한다. 같은 표 제2호다목 및 라목을 각각 라목 및 마목으로 하며,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. 식육가공장

구분	평가항목
인프라 구축 정도	식육가공장의 생산라인, 구내조경, 민원·악취 발생, 폐수처리, 실험실 구축 및 실험자 능력 정도, 식육가공장의 전체 면적 등
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운용실태	식육가공장의 위생관리, 시설관리, 위해요소의 분석, 중요관리점의 감시 등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의 운용실태



**별표 3** 제1호가목에 (5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(5) 검사관은 생체검사결과 분변 등으로 체표면 오염이 심하여 교차오염이 우려된다고 판단 되는 가축은 그 오염원이 적절하게 제거될 때까지 도축을 보류하거나 도축 공정 중 그 오염 원이 제거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**별표 3** 제1호나목에 (7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(7) 검사관은 생체검사결과 분변 등으로 체표면 오염이 심하여 교차오염이 우려된다고 판단 되는 가축은 그 오염원이 적절하게 제거될 때까지 도축을 보류하거나 도축 공정 중 그 오염 원이 제거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**별표 4** 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라. 그 밖에 원유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

**별표 10** 제6호가목(4)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(4) 지육을 운반하는 냉장차량의 경우 지육이 차량 적재고 바닥에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매달 수 있는 설비를 하여야 한다. 다만, 지육을 포장하거나 위생용기에 넣은 상태로 운반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지 제1호의5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지 제1호의6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지 제2호서식 앞쪽의 출하농가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에 제5호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출하농가	성명		주민등록번호
	주소		전화번호
	안전관리인증농장 여부	적용 [ ], 미적용 [ ]	농장명 및 농장식별번호 절식 시작 일시



5. 절식 시작 일시는 가축을 도축장에 출하하기 전에 사료급여를 중지한 일시를 작성합니다.  
(예) 2016. 3. 23. 09:00

### 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영업소의 식육가공업의 영업자에 대한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.

1. 2016년 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인 영업소: 2018년 12월 1일
2. 2016년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인 영업소: 2020년 12월 1일
3. 2016년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영업소: 2022년 12월 1일
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소: 2024년 12월 1일

### 별지

■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[별지 제1호제2서식] (양쪽)  
□ 한글중명서

제 호

**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 적용 확인서**

영업자:  
회사명:  
소재지:  
적용 업종:  
적용 품목:  
조건:

「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」 제7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 적용 직업  
장으로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  
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

제인

210aw029(별지제2서식) (2024.4.1)

■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[별지 제1호제5서식] (양쪽)  
□ 한글중명서

제 호

**안전관리인증(HACCP) 적용 인증서**

영업자(농업인):  
회사명(농장명):  
소재지:  
적용 업종:  
가공품의 유형:  
중요관리점:  
유효기간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년   월   일부터   년   월   일까지

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 제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6항·제7항·제9  
항 또는 제7조의5제5항·제6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(작업장·업소·농장)(HACCP)으로  
위와 같이 인증합니다.

년   월   일

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

직인

210aw029(별지제5서식) (2024.4.1)

